202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소관)

2024.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여성가족부: 82건]

가. '	여성정책 : 3건
1.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1
2.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기업 관리1
3.	공중화장실 영유아 시설 점검· 개선 ·······1
나. :	가족정책 : 13건
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1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관련2
6.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가능성에 대한 근거 제시2
7.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문제 해결 대책 마련2
8.	양육비 지원 금액 증액2
9.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 개선2
10.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소속 변호사 처우 개선3
11.	최근 사회 현상과 인식을 반영한 저출산 대책 마련3
12.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 처우 개선3
13.	광역 가족센터 설치 방안 검토3
14.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이중언어 코치 및 통번역사 처우 개선4
15.	국제결혼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후속조치 마련4
1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방만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4
다.	청소년정책 : 27건
17.	변산반도 생태탐방관 숙박자에 대한 명단 제출4
18.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 당일 식사 관련 해명 필요4
19.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부적절한 해외출장에 대한 감사 필요4
20.	세계잼버리대회 시 현장학습 활동 관련 업체 선정과정 등 파악 필요 … 5

	21. 국	'제 행사 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진료참여 협의 관련5
	22. 카	릭터 저작물 상품화권 계약 시 정산·환수 제도 개선 마련5
	23. き	소년정책 관련 삭감 예산의 복원 방안 검토5
	24. き	소년박람회 및 내일이룸학교 관련 삭감 예산의 복원 방안 검토5
	25. 11	17센터 관련 삭감 예산의 복원 및 상담사 처우 개선6
	26. き	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 노후화 개선 방안 마련6
	27. き	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6
	28. き	소년사이버아웃리치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6
	29. 시	·이버상담원 전문성 강화 및 청소년 상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7
	30. を	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정비 필요 ······7
	31. き	소년이 구인 광고 등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례 파악 및 대책 마련7
	32. を	l의선 책거리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8
	33. き	소년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8
	34. き	소년유해환경 점검시 적발된 업소에 대한 제재 및 사후 관리 철저 등8
	35. 국	'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완공을 위한 노력 필요9
	36. 국	'립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간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9
	37. 학	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계 및 지원 제도 강화9
	38. ই	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검토9
	39. き	소년회복센터 운영 및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9
	40. 현	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10
	41. 국	'립청소년 수련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환경 개선 필요10
	42. 우	-수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발굴 장려10
	43. 틸	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과 별도 운영 필요10
i	라. 권'	익증진 : 38건
	4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삭감 예산의 복원 방안 검토11
	45. 보	.조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보충 방안 검토11
	46. 7	·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예산 원상복구 검토 ······11
	47. さ	인권교육 예산 회복 방안 검토······11
	48. 성	매매피해자 지원예산의 삭감 철회 검토 ·······11

49.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등 삭감 예산 회목 검토12
50.	스토킹 및 여성 묻지마 범죄 대상 계획 마련12
51.	여성가족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의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12
52.	가정폭력상담소 전달체계 재정립12
53.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를「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13
54.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강화13
55.	「스토킹방지법」상 "피해자"의 정의 확대13
5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제도 전국 확대13
5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 제고 등을 위해 홍보 강화13
58.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장 대책 마련13
59.	지자체에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14
60.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14
61.	체육계 성범죄 관련 스포츠윤리센터와 적극 협조14
62.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및 기능 정립14
63.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상향 등 사업 운영 방식 재검토 14
64.	지자체별 여성안심귀갓길 제도 운영 현황 파악15
65.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15
66.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점검주기 확대15
67.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주소지 허위정보 제출 방지 방안 마련15
68.	교육부 협력, 청소년 대상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15
69.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 중 성범죄자의 자원 봉사 제한16
70.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16
71.	청소년 성폭력 범죄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 수립16
72.	청소년이용시설의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대책 마련16
73.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연구소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제고16
74.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속 조치17
75.	대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 예산 지원17
76.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17
77.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잔여금 전액 국고 환수18
78.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호 대책 마련18

79. 탈북여성 지원사업의 예산 별도 편성 등 예산 증액1
80. 북한이탈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원 증원1
81.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에 탈북민 여성 관련 내용 포함1
마. 기획조정실 : 1건
82.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협조 필요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2건]
83. 모바일 플랫폼 기능개선 사업 계약 관련 보고 필요1
84.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의 상시학습 환경 체계 구축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3건]
8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1
86.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환경 개선 필요1
87. 우수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발굴 장려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건)
88.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 및 소속 변호사 처우 개선 2
89.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3건]
90.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에 대한 신속한 임명 필요2
91.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제고2
92.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 시 탈북민 일선 배치2

2023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여성정책]	
1.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채용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향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2.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모부성제도관련법 위반 등에 대하여 관리하고 제재할 것	○ 기업 HR 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율협약 기업의 성별균형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사회적 인프라를 아이돌봄 친화적 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의 영유아 시설을 개선할 것	 ○ '돌봄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여 관련 규정[*]이 마련된 바 있으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제18호 -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준수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음('23.12월)
[가족정책]	
4.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부모들의 민간 육아도우미서비스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시간 보장, 시급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총 16시간) 시 수당을 지급 중('23.1~)이며, '24년에는 기존 최저임금 수준의 돌봄 수당을 전년대비 5% 인상함 * 돌봄 수당(최저임금) : ('23) 9,630원(9,620원) → ('24) 10,110원(9,860원)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법안 처리를 위한 의원실 협의('24.2월) 등 진행 중임
6. 2024년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11만 가구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 정부지원 규모와 비율 확대, 다자녀가구 추가지원 등으로 이용가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예상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양성체계개편 등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할계획임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21) 72천 → ('22) 78천 → ('23) 86천 가구
7.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이용자 불편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임 ○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금액을 증액할 것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 한부모: ('23) 20만원 → ('24) 21만원
9.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내용을 개선할 것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간소화(감치명령 결정 후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 이행명령 결정 후양육비 채무불이행시 제재조치) 관련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었으며('24.2.29, 국회 본회의 통과), 명단공개 의견진술기간 단축 등 관련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포함)	

- 10.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 가정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29)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를 추진 중임
-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 11. 저출산 대책에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20대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44세의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할 것
- 저출산 인식조사('23.11월, 저고위·문체부)에 따르면 2~30대의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47.9%), 양육·교육부담(4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저출산 관련 효과 높은 해결 방안으로는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53.2%), 돌봄 등 사회 인프라 구축(37.9%)이 가장 높음
- 이러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인증제도 지원 등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12.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 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현황 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 노력을 지속하겠음
- 13. 시·군·구 가족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 가족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광역 가족센터 설치를 위해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이중언어 코치와 통번역사의 처우를 호봉제 적용 등을 통해 개선할 것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현황 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 노력을 지속하겠음
15.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과의 협업 등으로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할 것	 ○ 국제결혼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 지자체, 경찰청 등 불법 광고 처분기관에서 처리결과를 여가부에 회신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16.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임차료, 관리비 및 기관장 관용차 렌트비의 지출 과다 등 방만 운영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임차료, 관리비등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현장점검을 실시('23.11월)함 ○ 기관장 관용차 관련, 신규 차량 임차계획은 전면 재검토 및 취소('23.11월)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을 1년 연장하여 사용 중임
[청소년정책]	
17.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여가부 공무원의 변산반도 생태탐방관 숙박자 명단을 제출할 것	○ 숙박자 명단은 국정감사 당일 기 제출하였음 ("김○○"형식)
18.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 날 온열질환 등으로 참가자들이 쓰러 지는 등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장관이 여유 있게 식사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할 것	○ 개영식 전에 행사장 인근에서 지원인력 격려 등을 위해 식사를 한 것으로 혼란이 발생한 상황 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님
19.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의혹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감사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잼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

기기 취기스크기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의사항 포함)	
20.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시 현장 학습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업체선정 과정이나 계약방식의 공정성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파악할 것	○ 잼버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
21. 향후 국제행사를 할 때 한의사 협회의 한의진료센터 운영 제안을 거절하여 진료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잼버리조직위 사무국에 따르면 대한한의사 협회와 협의를 통해 스탭허브 지역에 한방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한방진료를 진행하였음
22. 캐릭터 저작물 상품화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국가에 대한 정산·환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잼버리조직위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새버미'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념품을 제작 판매한 회사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로열티를 정산· 환수 조치중임
23. 삭감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회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 하여 보고하고 청소년예산 삭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24년 청소년정책 예산 관련 의원실('23.11.8) 및 여야 보좌진('23.11.10) 설명을 완료함 * 청소년정책 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청소년의 달행사(박람회) 3억원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8.5억원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16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됨 ○ 향후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및 현장과의 지속 소통 등 노력해 나갈 예정임
24. 청소년박람회와 내일이룸학교의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청소년 박람회 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3억원 반영되었으며, 금년 5월 박람회 개최 예정임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일이룸 학교 사업을 개편하여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24.1월~)

25. 관련 부처 및 현장과 협의하여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예산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담사 처우를 개선하고, 여가부 상담 복지센터에서 117학교폭력 신고 센터로 파견한 상담사에 대하여 기간제법과 파견법 위반 시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

- 여가부의 117센터 예산은 '24년부터 경찰청 예산에 반영(15억) 되어 17개 시·도 경찰청 에서 인력 채용하여 운영('24.3월~)중임
- 노무법인 자문 결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ㅇ 앞으로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 청소년상담1388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각급 학교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의 이직률, 평균 근무연한, 채용 평균 소요시간, 처우개선 대책 등을 보고하고,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임금가이드라인(종사자 기본급 기준표)을 마련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센터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음
 - * 센터 종사자 이직률, 평균 근무연한 등에 대해 서면답변서 제출 완료
- 2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우를 개선 할 것
- 청소년상담1388 상담원 대상 교육 콘텐츠를 사례 중심·실습 위주로 보완하고 신규 상담원 교육시간을 확대(6시간 → 8시간)하였음('23년~)
- 0 사이버상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28. 청소년사이버아웃리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이버아웃리치 상담원을 확충(8명 → 18명)하고, 운영 시간(7.5시간 → 10.5시간) 및 채널(4개 → 6개)을 확대함('23년~)
- 사이버아웃리치 공백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29. 사이버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상담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상담 전반에 대한 점검을할 것
- 사이버상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사례 중심 위기 개입 방안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음
-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3년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특화 사업을 시작 하였으며, 청소년상담 전문 기관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30.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를 정비 할 것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신·변종 매체물인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음('20.12월)
- 앞으로도 신·변종 유해매체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필요시 고시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표시, 성인인증 등 청소년보호법상 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나가겠음
- 31. 구인광고를 위장해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등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안전망 내 필수연계기관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모니터링·발굴하고, 청소년의 위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음
 - 구인·구직 플랫폼 내 성매매 유인 등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와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음

- 32. 경의선 책거리 공원의 청소년 성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진행 계획 수립 및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의선책거리 위기청소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경찰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해당 지역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연합아웃 리치를 실시('23.11월)하였으며, 전문 요원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 협업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성범죄 위험 장소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지속하겠음
- 33. 청소년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마약 예방 프로그램, 치료적 사법 정책, 마약 예방 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23.11월)하고, 마약류대책 협의회(국조실 주관)를 운영하고 있음
 - * 여가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 청소년 마약류 차단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중
- 현재 중장기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목표· 방향, 정책 연계를 위해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 마약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34.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검하는 등 계획적·체계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할 것
- 청소년 보호 점검·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점검·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였음('23.11월)
 - * 조치현황을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으로 구분·작성 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음
- 지자체 합동 점검 단속계획 수립 시 지역 내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고 협조 요청 하였음('23.11월)
 - * 계기별 점검·단속 확대 : ('23) 5회 → ('24) 7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의사항 포함)	
35.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7년 하반기 디딤센터 개원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건립추진 과정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추진일정: 설계용역 추진('23.10~'25.4), 건설공사 추진('25.6~'27.6), 개원('27, 하반기)
36.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광주 청소년디딤센터의 차별화 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 문제요인 및 치유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 국립청소년치료센터 특성화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 ('24)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 특성화 운영방안 연구' 정책연구 실시
3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 중단 청소년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음('24.2.29, 본회의 통과) *「학교밖청소년법」개정('24.3.26 공포, 9.27 시행예정) * (현행)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 (확대)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38. 교육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 교육부의「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안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안 국회 발의('24.1.4, 교육위 소위 계류)
39. 청소년회복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4년부터 기본급 호봉제를 도입함 * 지원예산(개소당) : ('23) 109백만원 → ('24) 113백만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4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로 충당하던 자체수입을 청소년활동을 위한 사업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활동 제공을 위한 노후 국립 청소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공공기관 인건비의 국고보조 편성은 기관 자체수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지원 중
- 안정적 인건비 지급과 노후 국립청소년수련 시설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41.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기능저하 문제해결 및 낙후된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 할 것
- '24년도에 낙후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생활관 일부리모델링예산을 확보(16억)하였음
 - 생활관 리모델링 및 노후화된 국립청소년 수런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4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을 선발·지원하고 다양한 채널을 확산시키는 등 청소년활동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할 것
-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24년 사업예산을 확보(8억) 하여 현재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43.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주 배경청소년 사업과 별도로 추진할 것
-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 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
 - * 하나원 소속 탈북청소년 대상 사회적응프로그램(기초생활, 경제 및 문화체험) 및 기본교육(자기이해, 인권, 건강, 진로 등)
 - 앞으로, 탈북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여 지원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권익증진]	
44.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의 삭감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4년 예산은 신종폭력 및 복합피해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제폭력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45.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 하지 않고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통합서비스 강화 등 사업 효율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된 일부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질 제고, 예산집행 현황 점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46. 피해자 지원의 공백 등을 예방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상담인력 증원 등으로 종사자 신분유지 및 서비스 지원 사각 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47. 성인권교육 예산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 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지원하고 '24년 예산에 반영 [*] 함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특화교육 지원 : 300백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48. 성매매피해자 지원예산의 삭감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시설 자연감소 및 집결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로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하였고, 국회 증액(600백만 원)으로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구조지원 사업(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49.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 그램 운영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의 삭감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예산을 회복할 것
- 기개발된 콘텐츠('23년 15종)의 유관기관(교육부, EBS 등) 연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예방교육 플랫폼(디클) 기능 개선을 추진 중이며,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교육·홍보 사업(신규, 2억)으로 재구조화하였음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증액되었음('23년 5.9억 → '24년 6.1억)
- 50. 스토킹과 여성 묻지마 범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스토킹방지법」을 제정('23.1.17 공포, '23.7.18 시행)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배포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
 - *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4개소, 치료회복 16개소
- 특히, 스토킹 피해자 긴급 보호·상담 등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임
- 51. 여성가족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사건에 대한 처리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 재발방지대책은 국정감사 당일 열람조치 완료
- 52.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가 여 성폭력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를 재 정립할 것
-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증가하는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상담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23.11월) 중임
 - * 통합상담소 확대(증 26개소)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상담인력 증원(53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3.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여성 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할 것	○ 1366(여성긴급전화)의 근거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여성 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사전 컨설팅을 완료('23.9월) 하였으며,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54. 5대 폭력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하여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23년 시범사업(2개소) 운영 결과를 토대로 '24년 5개소로 운영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운영기관 지속 확충 및 매뉴얼 개발·배포 등 향후에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5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의 정의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스토킹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할 것	○ 스토킹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의 실익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5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 동물 위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	○ 일부 지자체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반려 동물 위탁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임
5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23년 가정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메인 캠페인 영상, 정책 홍보 영상 등을 유튜브, 버스·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송출하였음 ○ 향후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등 주요 계기에 맞춰 가정폭력 인식 개선, 지원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임
58. 스토킹 피해자에 대하여 긴급 주거지원 외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 장비 구비, 호신장비지급 등 안전 장비 구축비를 '24년 예산으로신규 편성함 스토킹 피해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포함)	

- 59.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자체에 화장실 안심비상벨, 안심거울 등의 설치를 독려하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23년 지자체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의무화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지자체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방지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음
- 60. 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 하는 등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합상담소에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 상담인력을 증원함(53명, '24.1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방식을 개편(단년도 프로그램 공모 사업 → 지속 운영 사업) 하고 지원기관 통합연수, 보수교육 등을 지원 중임
- 61.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성 범죄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체육계 성범죄에 대해 문체부, 스포츠 윤리센터와 적극 협조하여 처리하고,
-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건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음
- 62.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도록 노력 할 것
- 신규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병원 인센티브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음
- 63.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 모바일 고지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및 예산 집행 방법을 재검토할 것
-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이벤트 및 제도 홍보
 영상 송출(23.12월)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열람률을
 개선함
 - * ('22) 31.2% → ('23) 35.8%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채널(카카오톡, 네이버) 중 카카오톡 발송 방식을 카카오 페이 인증 대신 카카오톡 직접인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열람 절차 간소화를 추진('24년)하고,
- 대한안전산업박람회 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24.9월)를 강화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64. 여성안심귀갓길 제도의 전국 적인 표준 및 개선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여성안심 귀갓길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활용하여 여성안심 귀갓길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겠음
- 향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시 여성이 안전한 환경 설계에 대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지속 유도 해 나갈 예정임
- 65.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통계 구축, 정기 점검 및 피해 방지·대응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시 약물 관련 성폭력 피해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통한약물과 관련된 증거 채취 등 피해자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 해바라기센터에 증거채취 관련 의료업무매뉴얼 기 배포
- 66.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점검주기를 1년에서 연 2회로 변경할 것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
 - *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23.8.7)
- 6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범죄자 주소지 허위정보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업무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경찰청,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음('24.3월, 8월, 11월)
- 68.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HIV/AIDS 등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시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청소년 대상 성 보건 교육자료(HIV 예방)'를 활용하여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23.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 아동·청소년 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고 자원봉사를 제한할 것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 하도록 하는「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이 국회 에서 논의 중임 *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23.6.2)
70.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온라인그루밍 범죄 차단을 위해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온라인 → 온·오프라인 행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피해 상담 지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음
7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타 부처 연계 공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지자체, 유관기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성범죄 위험 장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구인·구직 플랫폼 내 성매매 유인 등 청소년 유해 의심 업소에 대하여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
72.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여부 미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복지법(복지부 소관)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임 *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23.12.21)
7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위안부'문제 관련 전문 연구 및 자료의 체계적 집적·관리를 통해, 역사 왜곡·훼손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임 *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연구서 20여종, 전범진술서·국회회의록 등 사료 조사수집 705건, 디지털아카이빙(아카이브814) 5,770여건 등

74.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은 성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마사지를 받는 등 말 그대로 파렴치한 횡령범죄를 저지른 유미향의원이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보호시설의 인건비로 쓴다며 국고 보조금 6,500만 원을 타내서, 이를 직원들 계좌에(인건비인 것처럼) 입금한 뒤 '기부' 명목으로 다시 상납받았음. 이는 사기꾼들이 흔히 저지르는 윤미향표 '기부금깡', '국민 혈세깡' 범죄임. 이에, 정의기억연대에 국고보조금 반환, 이자 반환 명령,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등 여가부에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규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환수 처분 절차를 추진 중임
 - *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23.11.20.) → 보조금 반환명령('24.2.7.) → 납부독촉('24.4.~5.) 예정

75. 대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에 예산을 지원할 것

하게 시행할 것

할 수 있는 모든 처분 조치를 신속

- 이 대구 '희움역사관'의 교육관 건립 관련 예산 지원 요청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을 검토하겠음
 - * '14년 희움역사관 건립(총 13.6억) 시 국비 2억 지원
- 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76.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적극적 이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확대*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 생활안정지원금(월, 만원) : ('23) 171 → ('24) 179 (5%↑) 간병비(월, 만원): ('23) 313 → ('24) 328 (5%↑)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7.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 부터 받았던 위로금의 반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해산 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잔여금 (57억원)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	○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은 민법 제80조에 따르며,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 되어야 할 사항임
78. 북한이탈여성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	○ 폭력 피해를 당한 북한이탈여성 대상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겠음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10개소)
79.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주여성 지원사업과 별도로 편성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할 것	○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예산의 별도편성 여부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음
80. 북한이탈여성 규모를 고려하여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상담원을 늘릴 것	○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하겠음 * '24년 예산 수요조사 시 추가설치 희망 지자체 없음
81.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지원할 것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 예산 반영 시 '25년 예비조사, '26년 본조사 시행 예정
[기획조정실]	
82. 향후 국회에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 성실히 협조할 것	○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실히 협조해 나가겠음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83.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이 4,0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변경된 경위, 기능개선 작업 내용 및 계약과정을 보고할 것
-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서면 답변('23.11.10)과 의원실 방문 ('23.11.20)을 통해 보고 완료하였음
- 84.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충 상담원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상시학습 환경 체계를 구축할 것
-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환경 구축' 예산('24년, 9억)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 상시학습 교육 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충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겠음
 - * ('24) 상시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환경 구축 → ('25) 상용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8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하여 편성하고 인건비로 투입 하던 자체수입을 노후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
- 0 안정적 인건비 지급과 노후 국립청소년수련 시설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낙후된 청소년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 86. 노후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이 '24년도에 낙후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일부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16억)하였음
 - 생활관 리모델링 및 노후화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87. 청소년 관련기관에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급할 것
- 우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24년 사업예산을 확보(8억)하여 현재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8.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런하고,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변호사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4.2.29)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를 추진 중임 ○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89.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일원화 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확보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간소화(감치명령 결정 후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 이행명령 결정 후양육비 채무불이행시 제재조치) 관련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었으며('24.2.29, 국회 본회의 통과),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사전절차(예: 의견진술)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0.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을 신속히 임명할 것	○ 신임 소장 채용을 완료(°23.12월)함
91.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 결과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 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22년 이후 관련자료 수집과 연구서 간행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 '22~'23, <민족과여성>역사관소장자료목록화, 『일본군 전범이 말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Ⅰ・Ⅱ 발간, 일본국회회의록 분석 발간 ○ 연구소가 자료집적, 전시기능, 디지털아카이브등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겠음
92.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탈북민들을 일선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 예산 반영 시 '25년 예비조사, '26년 본조사 시행 예정